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(안)에대한의견청취의견

의안 번호	19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5. 14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본 지역은 '98.12.10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-80호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고시되어, 우리구에서는 주거·주변 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환경오염의 근원적 해소, 도시기반시설 및 근린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흥티마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코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 면허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중.
-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되었다는 사유로 매립기본계획변경 고시(해양수산부 고시 제2002-11호 2002.1.30일)에서 제외된 상태이며,
- 공유수면 매립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(인가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착수) 미이행으로 인해 매립면허가 상실되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에 재반영코자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내용임.
- ※ 3개월 이내 미착수 사유 : 부산시 일단의공업용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, 민자투자자 선정 및 사하구 의회 조례제정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유임.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안)에 있는 다대동 1343-1번지 지선 공유수면의 매립에 대한 검토의견.

2. 주요골자

-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안) 참조.

3. 관계법령 및 기타

-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
 -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광역시장의 의견(제2항)과 광역시장이 제출하는 의견(제3항)에는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함.

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(안)

1. 대상지역

연번	지구명	매립목적	면적(km ²)	위치	주관청
1	사하지구 (홍티마을)	기타시설용지 (도로,근린생활시 설,공업용지확충)	0.045011km ² (45,011m ²)	사하구 다대동 1343-1번지 지선 공유수면 (홍티마을)	사하구

2. 매립지 현황 및 검토사항

연번	지구 및 위치	매립지 현황 및 검토의견
1	사하지구(홍티마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건물 난립되어 주거,주변환경이 열악한 지역임. ○ 주변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매립필요. ○ 우리구 공영개발사업 매립예정지역임.

3. 검토경위

- 상기 주문 내용과 같이 낙후된 지역의 정비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·고시하기 위함.

4. 향후추진일정

- 2002. 5 :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후 기본계획 확정·고시(해양수산부)
 - ▷ 매립기본계획(안)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협의
- 2002. 6 : 공유수면매립면허(승인) 및 실시계획인가(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)

【검토의견양식】

사 하 지 구

1. 매립지구명 : 사하지구

2. 위 치 :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343-1번지 지선 공유수면 (홍티마을)

3. 면 적(km²) : 0.045011km² (45,011m²)

4. 목 적 : 기타시설용지 (도로, 근린생활시설, 공업용지확충)

5. 현 황 : 신평·장림협동화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, 해안선을 낀 부채꼴 모양의 저지대로서, 배후 국유지상에는 70여동의 무허가 건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공유지상에는 무단폐선 및 무단폐기등으로 주변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임.

6. 검토의견

구의견

-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건물이 난립되어 주거,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서, 주변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매립이 필요한 지역임(우리구 공영개발사업예정지역임.)

구의회 의견

- 공유수면 배후 국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변지역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.

